

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이의영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9월 5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8일

3. 제안이유

- 도내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해 운용 중인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용어의 수정(안 제2조)
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(안 제4조)
- 인용된 조례 명칭을 바르게 수정(안 제5조, 안 제6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제출배경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해 운용 중인 조례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맞도록 정비하고, 조례에 인용된 법령 및 조례의 명칭을 바르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나. 주요 검토내용

- 안 제2조는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법령문의 간결한 표현을 위해 약칭을 사용하여 정비하였습니다.
- 안 제4조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이 2020년 12월 29일 전부개정(2021. 12. 30. 시행)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.
- 안 제5조와 제6조는 이 조례에서 인용된 조례의 명칭을 수정한 것으로 잘못 표기된 조례명을 바로 잡았습니다.³⁾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한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은 당연합니다.
- 또한, 중복되는 표현을 피하고, 정확한 관련 근거 제시와 명확한 명칭을 사용한 것은 충청북도의 입법 신뢰도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3) 이 조례 제정 당시(2014. 10. 31.)에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(2003. 6. 13. 제정)의 ‘기금’을 ‘자금’으로 오기 표시하였고,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」는 2015년 3월 27일에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로 개정되었는데 이를 반영한 개정안이 나오지 못하였음